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6.
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고시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사유
북대구	경북대학교	대학교 구내	필수	경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대구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복지관1층	본인희망

나. 해지일자 : 2019. 11. 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11. 2.까지 유효